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98 발의연월일: 2020. 12. 08.

발 의 자: 민형배·김민철·김철민

박광온 · 소병훈 · 송갑석

안규백 · 양경숙 · 이소영

이용빈 · 이정문 · 임종성

주철현 · 최종유 · 홍익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러 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 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2.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채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으로 본다.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 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 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 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 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 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 한다.
- 2.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
 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
 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
 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